

전 주 지 방 법 원

화해권고결정

사 건 2020드단 위자료

원 고 ()

전북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(만성동)

피 고 ()

김제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... 담당변호사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정사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2,000만원을 2020. . . .까지 지급하되, 이를 어길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20. . . .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2.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전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0드단 위자료

원 고 ()

전북

)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(만성동)

(송달영수인 전종필)

피 고 ()

김제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

변 론 종 결 2020. 9.

판 결 선 고 2020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3. .부터 2020. 10. 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,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0. 3. 1.경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